

〈서면답변〉

- 정귀영 위원('98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관리실 '98. 11. 23)

부천가스폭발사고 대책

(질 의)

- 폭발사고 후 부천시장이 두 차례나 지휘보고를 내는 등 도지사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도에서는 일부 자금지원외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사가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 도에서의 피해기업과 주민 등에 대한 지원대책은?

(답 변)

- 이번 부천 LPG충전소의 사고발생은 사업주인 대성에너지(주)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검찰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 도에서는 사고가 발생되자 도 소방본부로 하여금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한 사고수습에 들어 갔으며,
- 도 전문진단팀으로 하여금 피해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 피해복구를 위해 부천시에 사고수습대책본부와 합동 보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피해공장에 대하여는 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25억 5,500만원을 긴급 배정하여 금융대출을 받도록 조치하여 16개 업체가 21억 900만원을 신청하여 연리 3%조건으로 대출중에 있으며
- 비제조업체 13개소에 대하여는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4,5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추가소요자금(유통구조개선자금) 9,000만원은 농협에서 차입하여 우선 융자할 계획임
- 응급복구처리비, 잔재처리비 및 손해사정비용 등에 소요되는 6억원을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또한 98. 11. 18 도지사 주관으로 도민대화실에서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4명, 부천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 8명과 농협본부장, 한미은행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조기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 선배상 후구상건에 대하여는 부천시에서 배상주체가 되어 시금고인 농협에서 기

채하여 선보상하고 후구상토록 조치하여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가해자인 대성에너지(주)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으며

- 피해공장이 금융권에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과 세금감면, 수출애로 지원 등의 요구에 대하여는 도, 부천시, 경인지방국세청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피해주민에 대한 복구대책으로는 이재민 3가구 위로금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1,400만원, 부상자 위로 2,240만원, 구호품(라면, 담요 등)을 이미 부천시에서 지급하였으며,
- 실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지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고
- 또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인근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천시가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토록 협의하였습니다.
- 특히, 도지사는 빠른 시일내에 피해공장은 정상 가동토록 하고, 피해주민은 월동기 전에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지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제도개선

(질 의)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기업평가방법 개선과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집중육성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금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 효율성 유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부응하는 평가기준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현재 기업체 전문평가기관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며
 - 또한 신청업체 평가시 신용보증기관과 은행을 참여시켜 평가의 전문성을 기하는

동시에 융자대출의 One-Stop Service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 한편 저금리 정책자금의 지원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은 줄 수도 있지만
도의 이자차액보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일부 기업들 중에는 자
금지원이 절실하지 않은데도 작르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자칫하면 자금지원이
절실한 기업보다는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빈익빈 부
익부의 모순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우리 도에서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금융
권 우대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건의사항 추진실적

○ '97추진실적('96대비)

	건의 내용	추진실적(96→97)
운전자금	·대출기간연장 ·지원금액 상향조정 ·신청기회 확대	·2년→3년 ·2억→3억 ·1회→2회
구조조정자금	·지원한도 확대 ·지원업종 확대	·3억→5억원(연구개발비) · →수입대체품 또는첨단신기술, 신제품등의 업종에 지원확
	·기타 대출심사과정에서 공부상 확인 가능한 대표자, 소재지, 상 호 등은 즉시 확인하여 주도록 함	

○ ' 9 8 추진실적 (' 9 7 대 비)

	건의 내용	추진실적(97→98)
공 통	·지원자금 조기방출 ·시설투자 부대비용 지원 ·지원대상 확대	·97.11.7→98.1.9(공 고) ·업체당 지원금액의 10%이내 (1억원이내 신설)
운 전 자 금	·지원규모 확대 ·취급은행 확대 ·기타 : 수출주력기업 평가생략 우선지원 유관기관 선정 유망중기, 여성기업인, 첨단기술 보유업체 평가우대 등	·2,430억→2,434억원 ·23개은행→전은행
구조조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접수시기 조정 ·업체당 지원한도액	·1,176→1,428억원 ·상반기 자금소진시→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 ·7억→10억

국·공유지 활용방안 강구

(질 의)

- 이천 장호원의 국·공유지 임야에 소나무만 몇십 년씩 심어두는 등 활용성이 매우 적는데 공장유치 등 활용방안은?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시 장호원을 관내에는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 현재
 - o 국유림은 95필지 916,196㎡로 이중 사권설정(분수계약 및 대부) 및 매각예정지가 24필지 394,605㎡이며 산림으로 관리되고 있는 임야는 71필지 521,591㎡가 됩니다.
 - o 도유림은 6필지 104,475㎡로 경기도교육청 소관 102,347㎡(풍계리 103-1번지)와 공공용재산(하천 및 하천제방 등-타용도 사용불가) 5필지 2,128㎡가 있습니다.
- 이중 경기도교육청 소관 임야는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로 택지 공장 등 산림외의 용도로 이용하는데 제한사항은 없으나 소관청인 도교육청에 조회한 바 초·중등학교 건물신축용 학교용지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 국유림의 타 용도로의 활용은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경기도의 소관밖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은 목재생산 등 경제적인 가치이외에 국토보전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확보, 산림휴양인에 대한 서비스 등 공익기능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있으며, 산림정책도 국·공유림의 보전 및 확대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공유림의 보전 및 확대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공유림의 타용도로의 활용방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